

3.3(목)조간 (인터넷 3.2(수) 12:00 이후)



- ▶ 2011. 3. 2. 배포
- ▶ 총2쪽

보도자료

▶ 산재예방정책과 과장 김인곤
사무관 김용원
T E L : 02-6922-0916, 010-3359-5481
E-MAIL: theorem@moel.go.kr
F A X : 02-6922-0971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el.go.kr>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>

유해화학물질 관리, 앞으로 체계화·선진화된다

- 「화학물질의 유해성·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」 마련
- 발암성 물질 정보 제공 확대

- 앞으로는 기술발달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화학물질이나 기존에 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정부가 유해성·위험성을 평가하고,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관리가 이루어지게 된다.
- 고용노동부는 유해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'화학물질 평가체계 구축방안'을 수립('10.10월)하고
- 그 일환으로 화학물질 평가의 절차 및 방법, 평가위원회 구성·운영 등 세부사항을 정한 「화학물질의 유해성·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」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.
- 현행 「산업안전보건법」은 240여 종의 유해화학물질*에 대해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적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있다.

* 제조 등의 금지물질, 허가물질, 관리대상유해물질, 작업환경측정 대상물질,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, 허용기준 설정대상 물질 등

○ 그러나 그간 화학물질의 유해성·위험성 평가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화학물질을 유해성·위험성에 따라 법적 관리대상으로 추가하거나 재편하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왔다.

* 유해성(Hazard): 화학물질의 독성 등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의 고유한 성질(급성독성·발암성 등)

* 위험성(Risk): 근로자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노출됨으로써 건강장해가 발생할 가능성과 건강에 영향을 주는 정도의 조합

○ 화학물질 유해성·위험성 평가체계는 이러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, 평가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은 법적 관리대상으로 반영될 방침이다.

□ 한편,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발암성 정보가 확대되어 노·사에게 알기 쉽게 제공된다.

○ 고용노동부는 『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』 고시를 개정(11.3.2)하여 현행 58종에 대한 발암성 등급 표시를 184종으로 확대하여 제공하며, 이는 외국 주요기관*의 발암성 등급을 근거로 화학물질의 분류·표시에 관한 국제기준(GHS)**에 따른 것이다.

* IARC(WHO 국제암연구소), ACGIH(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회), EU CLP규칙(분류표시에 관한 규칙), NTP(미국독성프로그램), OSHA(미국산업안전보건청)

** GHS(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) : UN이 화학물질의 유해·위험에 대한 분류·표시를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해 마련한 기준

□ 문기섭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『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·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관리대상을 지속적으로 추가·재편하는 시스템을 운영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』 고 밝혔다.